인 천 지 방 법 원

판 결

사 건	2022고단633 도로교통법위반
피 고 인	김동준 (550515-0000000), 0000 주거 김포시 000 0000 0, 000-000 등록기준지 00 000 000 000 000
검 사	이00(기소), 황00(공판)
판 결 선 고	2022. 8. 25.

주 문

피고인은 무죄.

이 유

1. 공소사실

피고인은 2017. 12. 31. 21:42경 숭의동에서 무단횡단을 하였다.

2. 판단

증거목록 순번 10의 위반사실통지서에 의하면, 공소사실 기재 피고인의 무단횡단이 이루어진 장소가 명확히 특정되어 있지 아니하다. 또한 위 위반사실통지서를 작성한 단속 경찰관인 증인 김00의 증언에 의하더라도, 위 증인은 피고인에 대한 단속 내용 및 일시, 장소 등에 대해 기억을 하고 있지 못함이 인정될 뿐이고, 과거 교통법규를 위

반한 자가 아니거나 위반 여부가 확실하지 않은 상황에서 범칙금을 부과한 사실이 전혀 없다는 위 증인의 일반적 진술만으로는 이 사건 공소사실이 증명되었다고 볼 수 없으며,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도 없다. 결국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도로 횡단시설이 아닌 곳으로의 횡단에 관한 도로교통법 제10조 제2항 위반의 공소사실이 합리적 의심의 여지없이 증명되었다고 볼 수 없다.

3. 결론

그렇다면,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피고인에게 무죄를 선고하되, 형법 제58조 제2항 단서에 따라 무죄 판결의 요지를 공시하지 아니한다.

판사 정00 _____